



제439회국회(정기회)
제1차보건복지위원회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통합지원 서비스에 약사의 의약품의 적정 사용
및 관리를 위한 지원 사항 포함〉

■ 이훈기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19167호)

2026. 9.

보 건 복 지 위 원 회

전문위원 박동찬

목 차

I . 개요	1
II . 검토 의견	2
1. 개정안의 주요내용	2
2. 검토 의견	3
3. 관계 부처 및 단체 의견	9

I. 개요

1. 제안경위

- (1) 제 안 자 : 이훈기의원 등 10인
- (2) 제 안 일 : 2026. 6. 10.
- (3) 회 부 일 : 2026. 7. 23.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노인·장애인 등 통합지원 대상자에게 지원하는 보건의료 서비스 중 하나로 약사가 약국·가정·사회복지시설에서 제공하는 복약지도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고령자·만성질환자 등의 경우 다제약물 복용이 증가하면서 의약품의 오남용, 중복 처방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지만, 현행 규정은 단순 복약지도 중심으로 규정되어 있어 의약품의 적절한 사용과 지속적인 관리를 위한 지원을 충분히 포괄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약사가 제공하는 보건의료 서비스의 범위에 의약품의 적절한 사용 및 지속적 관리를 위한 지원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통합지원 대상자의 의약품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건강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안 제15조제7호).

Ⅱ. 검토 의견

1. 개정안의 주요내용

- 개정안은 약사가 통합지원 대상자에게 제공하는 보건의료 서비스를 ‘복약지도’에서 ‘복약지도 등 의약품의 적절한 사용 및 지속적 관리를 위한 지원’으로 변경하려는 것임(안 제15조제7호).

현행	개정안
제15조(보건의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통합지원 대상자의 욕구와 필요에 맞는 통합지원을 위하여 보건의료 분야에서 다음 각 호의 서비스를 확대하고 다른 서비스와의 연계를 강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5조(보건의료) ----- ----- ----- ----- ----- -----.
1. ~ 6. (생략)	1. ~ 6. (현행과 같음)
7. 「약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약사가 약국 및 통합지원 대상자의 가정과 사회복지시설에서 제공하는 <u>복약지도</u>	7. ----- ----- ----- ----- <u>복약지도 등 의약품의 적절한 사용 및 지속적 관리를 위한 지원</u>
8. (생략)	8. (현행과 같음)

2. 검토 의견

- ‘통합지원’이란 통합지원 대상자¹⁾에게 보건의료, 건강관리, 장기요양, 일상생활돌봄 등의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것을 말하며,
- 현행법은 ‘통합지원’ 서비스를 통해 거동이 불편한 노인 및 장애인 등이 병원이나 시설에 입원·입소하는 대신 살던 곳에서 지속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노쇠, 장애, 질병, 사고 등으로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살던 곳에서 계속하여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의료·요양 등 돌봄 지원을 통합·연계하여 제공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건강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하고 증진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통합지원”이란 제2호에 따른 통합지원 대상자에게 이 법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보건의료, 건강관리, 장기요양, 일상생활돌봄, 주거,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의 서비스 등(이하 “보건의료등”이라 한다)을 직접 또는 연계하여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 또한 현행법 제15조부터 제18조까지는 ▲ 보건의료(방문진료, 재활 서비스, 복약지도 등), ▲ 건강관리 및 예방(노인성 질병 및 만성질환 등의 예방·완화), ▲ 장기요양(방문요양·목욕 등), ▲ 일상생활돌봄(가사·이동·일상활동 지원 등) 등 분야별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하여야 하는 서비스의 종류를 명시하고 있으며, ‘보건의료’ 분야 서비스의 하나로 약사의 ‘복약지도’를 규정하고 있음.

- ‘복약지도’란 ▲ 의약품의 명칭, 용법·용량, 효능·효과, 저장 방

1) 통합지원 대상자: 노쇠, 장애, 질병, 사고 등으로 일상생활 유지에 어려움이 있는 노인과 장애인 등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통합지원 대상자”란 노쇠, 장애, 질병, 사고 등(이하 “노쇠등”이라 한다)으로 일상생활 유지에 어려움이 있어 복합적인 지원을 필요로 하는 노인, 장애인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법, 부작용, 상호 작용이나 성상(性狀) 등의 정보를 제공하거나
▲ 일반의약품을 판매할 때 진단적 판단을 하지 아니하고 구매
 자가 필요한 의약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을 의미²⁾
 함.

「통합지원 서비스 내용」

제15조(보건의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통합지원 대상자의 욕구와 필요에 맞는 통합지원을 위하여 보건의료 분야에서 다음 각 호의 서비스를 확대하고 다른 서비스와의 연계를 강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의료법」 제2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의사·치과의사·한의사가 의료기관 및 통합지원 대상자의 가정과 사회복지시설에서 제공하는 진료서비스
2. 「간호법」 제12조에 따른 간호사가 통합지원 대상자의 가정과 사회복지시설에서 제공하는 간호서비스
3. 통합지원 대상자의 신체적·정신적·사회적 기능의 유지·회복을 위한 재활서비스
4. 장기입원 및 급성기 치료 이후 회복이 필요한 환자를 위한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라목에 따른 요양병원 등의 의료서비스
5.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호스피스 사업
6. 방문 구강관리
7. 「약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약사가 약국 및 통합지원 대상자의 가정과 사회복지시설에서 제공하는 복약지도
8.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서비스

제16조(건강관리 및 예방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합지원 대상자의 노쇠, 노인성 질병, 만성질환, 장애, 정신질환 등을 예방하거나 완화하고 일상생활을 지원하며 건강관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건강관리 및 예방 등의 활동이 의료, 간호, 복지 등 다학제 간 협력을 통하여 상호 연계하여 이루어질 수 있도록 통합 방문기관을 지정하는 등 통합지원 기반을 조성하여야 한다.

제17조(장기요양)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쇠등으로 인한 통합지원 대상자의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서비스를 확대하고 다른 서비스와의 연계를 강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조제1항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노인성질환예방사업
2.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재가급여 및 시설급여
3.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서비스

2) 「약사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2. “복약지도(服藥指導)”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의약품의 명칭, 용법·용량, 효능·효과, 저장 방법, 부작용, 상호 작용이나 성상(性狀) 등의 정보를 제공하는 것
 나. 일반의약품을 판매할 때 진단적 판단을 하지 아니하고 구매자가 필요한 의약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제18조(일상생활돌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통합지원 대상자의 심신기능을 유지·향상하고 일상생활을 스스로 영위할 수 있도록 대상자별 특성을 고려하여 관계 법령과 조례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서비스를 확대하고 다른 서비스와의 연계를 강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통합지원 대상자의 재가 자립생활 유지를 위한 식사 등 가사활동 지원 서비스
2. 통합지원 대상자의 보건의료기관 등 방문을 위하여 필요한 이동지원 서비스
3. 통합지원 대상자의 신체적·정신적 기능을 향상·보완하고 일상 활동의 편의를 돕기 위한 보조기기에 관한 서비스
4. 부득이한 사유로 가족의 돌봄을 받을 수 없는 통합지원 대상자가 주간 또는 야간 동안 적합한 시설·기관에 통원하여 필요한 편의를 제공받는 서비스
5. 통합지원 대상자의 안전 및 건강 상태 확인 등을 위한 인공지능·사물인터넷 등 정보통신기술에 기반한 서비스
6. 통합지원 대상자의 기능·건강 상태를 고려한 주거 공간의 확보·제공 또는 주거환경 개선 등 주거지원 서비스
7. 의료기관이나 사회복지시설에서 퇴원 또는 퇴소하는 통합지원 대상자의 원활한 지역사회 복귀를 지원하는 서비스
8.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에 따른 맞춤형 급여 안내 서비스
9.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회복지서비스

□ 통합돌봄서비스 제공체계



자료: 보건복지부

□ 한편,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연구보고서³⁾에 따르면 상당수의 고령자는 매일 여러 종류의 의약품을 복용하고 있으며, 여러 의료기관에서 처방받은 의약품과 일반의약품을 함께 복용하는 과정에서 유사한 효능의 약물을 중복복용하는 등 의약품의 오·남용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데,

□ 5개 이상의 약물을 복용하는 외래환자는 약물 이상반응을 경험할 위험이 그렇지 않은 환자에 비해 88% 증가했으며, 다제약물 복용 시 약물 이상반응으로 입원할 위험도 2배 더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으며, 다제약물을 복용하는 노인이 그렇지 않은 노인에 비하여 낙상과 골절 위험도 또한 더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음.

- 보고서에 따르면 3종류 이상의 처방약을 복용하는 노인의 비율은 전체 노인의 25.8%이고, 85세 이상에서는 3종류 이상의 처방약을 복용하는 비율이 39.7%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음.

<65세 이상 노인의 3종류 이상 처방약 복용률>

(단위: %)

구분	3종류 이상 처방약 복용률
65세 ~ 69세	16.6
70세 ~ 74세	24.8
75세 ~ 79세	31.0
80세 ~ 84세	34.0
85세 이상	39.7
전 체	25.8

주 1) 3종류 이상 처방약 복용률은 현재 3개월 이상 복용 중인 처방약을 3종류 이상 복용하는 사람의 비율로 정의함

2) 2020년 노인실태조사 10,097명의 자료에 가중치를 적용하여 연구진이 분석하였음.

자료: 「초고령사회에 대응하는 노인의 의약품 사용 지원방안 연구: 지역사회 거주 노인을 대상으로(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4.12.)」

3) 「초고령사회에 대응하는 노인의 의약품 사용 지원방안 연구: 지역사회 거주 노인을 대상으로」(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4.12.)

□ 개정안은 통합지원 대상자에게 약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범위를 기존의 ‘복약지도’에서 ‘복약지도 등 의약품의 적정 사용 및 지속적 관리를 위한 지원’으로 변경함으로써, 다제약물을 복용하는 고령자와 만성질환자의 약물 오·남용 및 중복 처방을 예방하고 복약 관리를 강화하여 대상자의 건강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측면이 있을 것으로 보임.

□ 다만, 통합지원 대상자에 대한 복약지도 등 의약품의 적정 사용 및 지속적 관리를 위한 지원 과정에서, 「의료법」상 의사의 처방권 등 의료행위와 저촉될 소지가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대법원은 의학적 전문지식에 기초하여 의약품의 처방 내용을 결정하는 행위는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바 있음.

「의료법」

제18조(처방전 작성과 교부) ① 의사나 치과의사는 환자에게 의약품을 투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약사법」에 따라 자신이 직접 의약품을 조제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방전을 작성하여 환자에게 내주거나 발송(전자처방전만 해당된다)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처방전의 서식, 기재사항, 보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의료법 시행규칙」

제12조(처방전의 기재 사항 등) ① 법 제18조에 따라 의사나 치과의사는 환자에게 처방전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처방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후 서명(「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서명을 포함한다)하거나 도장을 찍어야 한다. 다만, 제3호의 사항은 환자가 요구한 경우에는 적지 않는다.

1. 환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다만, 환자가 가명 또는 전산관리번호를 부여받은 경우에는 성명 대신 가명을 적거나 주민등록번호 대신 및 전산관리번호를 적을 수 있다.
2. 의료기관의 명칭, 전화번호 및 팩스번호
3. 질병분류기호
4. 의료인의 성명·면허종류 및 번호
5. 처방 의약품의 명칭(일반명칭, 제품명이나 「약사법」 제51조에 따른 대한민국약전에서 정한 명칭을 말한다)·분량·용법 및 용량
6. 처방전 발급 연월일 및 사용기간

7. 의약품 조제시 참고 사항

8.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라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요양급여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는 행위·약제 및 치료재료에 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본인부담 구분기호

9. 「의료급여법 시행령」 별표 1 및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별표 1의2에 따라 수급자가 의료급여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행위·약제 및 치료재료에 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본인부담 구분기호

의료법 위반 [대법원 2018. 6. 19. 선고 2017도19422 판결]

의료법 제27조 제1항은 의료인에게만 의료행위를 허용하고, 의료인이라고 하더라도 면허된 의료행위만 할 수 있도록 하여, 무면허 의료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여기서 ‘의료행위’라 함은 의학적 전문지식을 기초로 하는 경험과 기능으로 진찰, 검안, 처방, 투약 또는 외과적 수술을 시행하여 하는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행위 및 그 밖에 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를 의미한다.

□ 따라서 개정안에 대해서는 「의료법」 및 「약사법」 등 관련 법률과의 정합성, 의약품의 적정 사용 및 지속적 관리를 위한 지원의 구체적 범위, 법 개정으로 인한 실익 등에 대한 면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3. 관계 부처 및 단체 의견

구분	제시 의견
보건복지부	<신중검토> ○ 고령자·만성질환자 등 다제약물 복용이 증가함에 따라 의약품의 오남용, 중복 처방 등 의약품의 적절한 사용 및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점에 대하여 공감함. ○ 다만, “복약지도 등 의약품의 적절한 사용 및 지속적 관리를 위한 지원” 서비스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약사가 의사 등 의료진의 역할까지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법제처	<신중검토> ○ 현행법 제15조제1호·제2호·제7호에서는 「의료법」상 의사·치과의사·한의사가 제공하는 진료서비스, 「간호법」상 간호사가 제공하는 간호서비스, 「약사법」상 약사가 제공하는 복약지도를 보건의료 분야에서의 서비스로 각각 규정하고 있음. ○ 즉 현행법 제15조는 보건의료 관련 직역에서의 주체들이 각 근거 법률에 따라 제공할 수 있는 보건의료 서비스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구조임을 고려할 때, 개정안 제15조제7호에서 규정하고자 하는 약사의 보건의료 서비스 내용·범위 역시 「약사법」과 일관되게 규정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임. ○ 또한, ‘의약품의 적절한 사용 및 지속적 관리를 위한 지원’의 내용이 「약사법」상 약사의 업무 범위와 부합하는지, 「의료법」이나 「간호법」상 다른 직역의 업무 범위를 규정한 것으로 오인될 우려는 없는지 등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구분	제시 의견
대한약사회	<적극찬성> ○ 본회는 2018년부터 지금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다제약물 관리사업을 수행하면서 대상자의 복용 의약품 점검, 중복·부적절한 약물사용 확인, 복약 상담 및 지속적인 약물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지역사회 중심의 약료 서비스를 수행해 오고 있음. ○ 그러나 현행 통합돌봄법은 약사의 역할을 '복약지도'로만 규정하고 있어 실제 지역사회에서 수행되고 있는 약물관리 서비스의 범위와 전문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 본 개정안은 지역사회 통합돌봄에서 약사의 역할을 기존의 '복약지도'에서 '복약지도 등 의약품의 적절한 사용 및 지속적 관리를 위한 지원'으로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통합돌봄 대상자에 대한 안전한 의약품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약사의 전문적 역할을 보다 명확히 반영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적극 찬성함.
대한의사협회	<반대> ○ 의약품의 적절한 사용 여부를 판단하고 치료 경과를 관리하는 것은 환자의 질환 상태, 검사 결과, 치료 목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의학적 판단을 필요로 하는 영역으로서, 의사의 진단·처방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음. ○ 그러나 동 개정안에서 신설하는 '의약품의 지속적 관리를 위한 지원'이라는 표현은 그 범위가 불명확하여 약사의 업무 범위가 진단·처방 영역까지 확대되는 것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으며, 이는 의사의 진단·처방권을 침해하고 환자 치료과정에 혼선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 ○ 이에 따라, 약사의 역할은 현행 법령에 따른 조제 및 복약지도 범위 내에서 명확히 운영되어야 하며, 동 개정안과 같이 약사의 업무를 포괄적으로 규정하는 것은 직역 간 역할과 책임의 경계를 불명확하게 하고 의료현장의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동 개정안에 반대함.

구분	제시 의견
대한병원협회	<반대> ○ 개정안에서 규정한 "의약품의 적절한 사용", "지속적 관리"의 표현은 포괄적이고 불명확하여 약사의 업무범위가 「약사법」의 규정을 넘어 확대 해석될 소지가 있음. ○ 통합돌봄의 대상인 노인·만성질환자·다제약물 복용환자는 의학적 판단이 지속 요구되는 고위험 환자군임. 약사가 독립적으로 의약품의 적정사용과 지속 관리를 수행하도록 하는 개정안은 오히려 의약품의 올바른 사용과 관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우려가 크므로 개정안에 반대함.

문 의 처

02)6788-5496